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6
----------	-----

2023. 6. 13.  
북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김형곤 의원 대표발의(12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북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형곤 의원 )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운행하며 지역에서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소나 지하철역을 연계하기 때문에 구민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연료비 상승, 이용객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

나. 재정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관내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자가 운행노선의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상당한 적자를 시현한 경우에 마을버스 운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조례안의 구조를 보면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및 산출방식(안 제3조), ② 재정 지원 대상으로서 필요한 요건(안 제4조), ③ 행정적 절차로서 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 방식(안 제5조), ④ 재정지원에 따른 보조금 정산 절차(안 제6조), ⑤ 재정 지원에서 제외 되는 사유(안 제7조)로 구성되어 있음.

##### 2 주요 사항 검토

가. 재정적 지원근거 및 산출방식(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

**제3조(재정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등이 재정지원기준액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2019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재정지원 산출방식을 보면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재정지원 기준액’이라 하는 바, 재정기준지원액보다 적은 수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재정지원 산정액의 85%를 한도로 지원하고 있음.
- ※ 재정지원의 한도액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2023년 4월 발표된 재정지원기준액은 457,040원이고, 한도액은 230,000원이며, 서울시는 월 재정지원 산정액의 85% 한도로 지원하고 있음.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을 보면 ① 2004년 마을버스 카드환승 정액보조(환승건당 80원) 실시 이후 운임 수입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②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승객 수가 급감하였고, ③ 무엇보다 낮은 연봉 및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운영을 맡는 기사가 시내버스업체 또는 배달대행업체로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마을버스 기사의 부족 등으로 운행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며 배차간격 지연까지 겹치면서 다수의 민원 발생과 승객 만족도 저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함.

〈표-1〉 강남구 마을버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버스 이용자	21,077,414	15,340,241	14,785,547	14,614,058
2019년 대비 증감	-	△5,737,173	△6,291,867	△6,463,356
2019년 대비 증감률	-	△27.2%	△29.8%	△30.6%

#### 나. 강남구 재정적 지원 필요성

○ 서울시는 적자를 시현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월 재정지원 산정액의 85%를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5%분은 자치구가 월 재정지원 산정액의 7.5%를 분담할 경우에 서울시가 매칭하여 7.5%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재정지원금 최종 분담비율 92.5%(시) : 7.5%(자치구)

○ 서울시와 강남구 간 협업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분담을 위해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 재정 지원 대상(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

제4조(재정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 재정지원대상사업체라 함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하는 바, 강남구 관내 해당 업체는 7개 업체이며 10개 노선을 총 87대의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음.

<표-2>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현황(7개 업체, 10개 노선, 총 87대 운행)

연번	업체명	노선번호	운행구간	차량보유대수
1	일원교통	강남01 강남03	일원동 ↔ 삼성웨딩홀 강남테시앙포레 ↔ 세곡푸르지오	18
2	포이운수	강남02	강남구민체육관 ↔ 양재역	9
3	개포운수	강남05	구룡마을 ↔ 석촌역	11
4	은곡운수	강남06 강남06-1 강남06-2	세곡동LH푸르지오 ↔ 삼성역7번출구 리엔파크4,5단지 ↔ 한아름아파트,사이룩스오피스텔 리엔파크 ↔ 한아름아파트,사이룩스오피스텔	18
5	스마일버스	강남07	서울의료원후문 ↔ 양재역	16
6	계현운수	강남08	신사사거리 ↔ 삼성역	5
7	신흥교통	강남10	개포주공4단지,7단지 ↔ 양재역	10

<표-3> 마을버스 업체별 월 예상 재정지원금

(단위 : 원)

구 분	85%(서울시)	7.5%(강남구)	7.5%(서울시 추가지원)
일원교통	36,778,752	3,245,184	3,245,184
포이운수	19,594,251	1,728,905	1,728,905
개포운수	28,409,882	2,506,754	2,506,754
은곡운수	25,348,479	2,236,631	2,236,631
스마일버스	74,176,440	6,544,980	6,544,980
계현운수	39,907,908	2,427,991	2,427,991
신흥교통	58,650,000	5,175,000	5,175,000
<b>합계</b>	<b>282,865,712</b>	<b>23,865,445</b>	<b>23,865,445</b>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강남구 간 협업을 통해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조례상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과 타당성, 목적 적합성 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질 의 : 발의자 말씀처럼 여러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재정지원 대상 판단 주체가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 답 변 : 서울시 조례를 준용했던 조례안 초안에는 심의위원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삭제하였음. 재정 적자에 한한 부분에만 지원하는 조례 내용 상, 재정 적자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재정 적자에 대한 판단은 마을버스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자동 집계, 전산화 되는 정보이므로 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하다 판단함
- 질 의 :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 사항이 수반되는 것이며, 본 제정 조례안에 근거한 추가경정예산이 이번 회기에 상정됨. 조례 발의 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조례 제정이 선행된 후 추가경정예산 신청이 가능한 것 아닌가

- 답 변 : 당초 올해 2월에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었으나, 집행부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마을버스업체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제정 조례안이 조정됨.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업체에 적자 부분 85%를 보전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나머지 15%에 대해 시·구비 매칭으로 7.5%씩 지원하여 100% 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구 조례도 서둘러 제정하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마을버스업체의 어려움과 지원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 예산 신청 순서 부분에는 양해를 구함
- 질 의 : 본 제정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 지원 대상업체는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보고 의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무리하지 않은가. 정산보고 의무를 보조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집행한 날을 기점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자 의견은 어떠한가
- 답 변 : 1개월 정도의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함. 보조금을 받은 날이 아닌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혹 집행을 안 하여 정산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집행으로 주장하며 정산보고 의무 회피 등의 우려가 있어, 정산보고 의무 기한을 보조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질 의 : 재정 지원에 대한 업체의 책무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 답 변 :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의 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업체의 책무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안에 동의함

## 7. 토론 요지

- “제정지원대상업체”를 제2조(정의)의 제4호에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의 책무와 정산보고 기한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76호

발의일자 : 2023. 6. 13.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 4호에 명시하고, 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정산보고 의무 기한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2. 수정내용

- “재정지원대상업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제2조제4호)
-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의 의무 사항 규정을 신설함(안제5조제3항)
- 재정 지원 대상업체의 정산보고의 기한을 조정·연장함(안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정지원대상업체"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안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제6조제1항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로 한다.

##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 3. (생략)</p> <p>&lt; 신 설 &gt;</p> <p>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및 선정)</p> <p>① · ② (생략)</p> <p>&lt; 신 설 &gt;</p> <p>제6조(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 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u>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u>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 3. (현행과 같음)</p> <p>4. <u>"재정지원대상업체"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한다.</u></p> <p>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및 선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정산보고) ----- ----- ----- <u>날로부터</u> <u>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u> ----- -----.</p>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운송수입금등”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 수행에 따른 운임수입금과 광고수입금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재정지원대상업체”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재정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월 운송수입금등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③ 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 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

사를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김형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김형곤·박다미·강을석·

오은누리·한윤수·노애자·

복진경·안지연·김진경·

우종혁·이도희·김현정 의원

(이상12인)

## 1. 제안이유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운행하며 지역에서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소나 지하철역을 연계하기 때문에 구민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연료비 상승, 이용객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

나. 재정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운송수입금등”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 수행에 따른 운임수입금과 광고수입금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재정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월 운송수입금등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6조(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 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

사를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⑨ (생략)